



의안번호	제 2015 - 14 호
보 고 연 월 일	2015. 4. 13. (제63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89차 전체 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4.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결과	1
5.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결과	5
II. 향후 일정	7

별첨 김세종,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검토”
 김세종, “식품·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안)”
 황병헌,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검토”
 황병헌,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안)”

I. 제89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5. 4. 6.(월) 15:00 ~ 18: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3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현아, 김세중, 김혜정, 노수환, 박지선, 범현, 오기찬, 이진국, 최준혁, 최진녕, 황병헌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결과 검토
-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¹⁾

4.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가. ‘허위표시’ 유형에서, ‘집단급식소에 허위 표시된 식품 등을 공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지 여부

- 전문위원 논의결과
 - 다수의견(강수진, 김세중, 김혜정, 노수환, 박지선, 범현, 이재권, 이진국, 최준혁, 황병헌) : 특별가중인자 미설정
 - ‘허위표시’ 유형은 식품 등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하고 있는데, ‘집단급식소에 허위 표시된 식품 등을 공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경우 식품 등의 물량이라는

1)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에 관하여는 5기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임

동일한 양형사유가 중복반영될 우려 있음

- 한편, 집단급식소에 공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집단급식소의 규모에 따라 공급된 물량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형평에 반함
- ‘허위표시’의 각 유형별 가중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는 대체로 그 다음 유형 기본영역의 권고 형량범위와 유사하므로, 특별가중인자의 적용은 실질적으로 1단계 유형상승을 의미하는데, ‘집단급식소’에 공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유형상승에 상응하는 정도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8월	4월 - 1년	10월 - 1년6월
2	일반 유형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6월
3	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8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은 크게 식품범죄와 보건범죄로 구분한 다음, 식품범죄는 다시 유해성을 요건으로 하는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과 기망성 범죄인 ‘허위표시’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허위표시’ 유형의 특성이 기망성에 있음을 감안할 때, 집단급식소 이용자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범행에 취약하다고 보기 어려움(소수의견의 주된 견해가 취약성에 있다면, 이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그 정의규정에 ‘집단급식소 이용자’를 두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에서만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한 이유도, ‘허위표시’ 유형은 유해성과는 무관한 범죄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을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낮다고 보았기 때문

- 소수의견(김현아, 오기찬, 최진녕) :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 정의규정으로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의미
- 피해 대상의 집단취약성을 고려한 양형인자로서 의미가 있음
- 피해 대상의 집단성·취약성이라는 특성은 유형분류의 기준인 ‘수익(양)’과 전혀 별개로 중복 반영의 문제 없음
- 최근, 소규모 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급식소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곳에 허위표시된 식품이 공급된 경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안으로 국민 법감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허위표시 유형의 양형인자 중에는 집단급식소에 허위표시된 식품을 공급한 경우를 반영할 수 있는 인자가 없음
- 유해 식품의 경우 ‘유아어린이용 식품인 경우’를 양형인자로 삼고 있는데, 집단급식소에 허위 표시된 식품이 공급된 경우에도 위 유해식품의 경우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음
- 식품위생법에서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조리사영양사를 두는 등의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

나. 그 밖에 다음과 같이 제시된 의견들에 관하여 논의결과 현행안

을 유지하기로 의견일치됨(구체적 검토내용에 관하여는 주무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1)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 (가) ‘허위표시’ 유형의 소유형을 5 내지 6개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나) ‘허위표시’ 제1유형의 상한을 1,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으로 하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다) 재범 및 상습범 처벌규정은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2)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 (가) 모든 유형에서 일반가중인자인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나) ‘허위표시’ 및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에서,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고,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다) ‘허위표시’ 및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에서, 특별감경인자인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의 정의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라) ‘허위표시’ 유형에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마) ‘허위표시’ 유형의 특별가중인자인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의 정의규정에 일반가중인자인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와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바) ‘허위표시’ 유형에서,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사)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에서, 제1, 2유형의 형량범위를 재조정 한 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 등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아) ‘부정의료행위’ 유형에서,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고 ‘객관적 위험성이 큰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자) ‘부정의료행위’ 유형에서, 특별가중인자인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경미한 상해는 제외)’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차) ‘부정의료행위’ 유형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5.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가. 현행안을 수정하기로 한 사항

- (1)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를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에서 제외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수수’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한 취지는 타인을 마약범죄로 유인하는 판매, 제공과는 가벌성에 큰 차이가 있고, 매수 또는 수수를 수반함에도 투약 또는 단순소지로

만 기소되는 경우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투약·단순소지 범행에서는 다른 감경인자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사유로 고려되지 않는데 반하여,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수수’를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사유로 할 경우 오히려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함
- 따라서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수수’를 ‘매매·알선 등’ 유형의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되,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사유에서는 제외하기로 의견일치

나. 그 밖에 다음과 같이 제시된 의견들에 관하여는 논의결과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의견일치됨(구체적 검토내용에 관하여는 주무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1)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가) 임시마약류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2)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 (가) ‘매매·알선 등’ 유형에 포함되어 있는 ‘매수, 수수’는 ‘판매, 제공’과 죄질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나) ‘대량범’의 제3유형은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3)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 (가) 특별가중인자인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정의규정인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

우’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마약류 판매경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또는 성범죄로 나아갈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나)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 및 ‘매매·알선 등’ 유형에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다) ‘매매·알선 등’ 유형 및 ‘수출입·제조 등’ 유형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라) ‘매매·알선 등’ 유형에 ‘매수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마) 특별감경인자인 ‘자수’를 ‘자수 또는 내부고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바) ‘수출입·제조 등’ 유형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하여 수입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사) 특별가중인자인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과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를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에서 가담정도가 무거운 경우’로 통합하여 하나의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도 그 예시사유 중 하나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아) ‘수출입·제조 등’ 유형에 ‘마약을 직접 소지한 채 입국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II.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90차 전체회의는 추후 개최하기로 함